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경기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경기문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창진, 도문열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송경택, 유정인, 이민석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장태용, 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.
-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는 사전에 방지해야 갈등의 소지가 적고,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들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으로써 시장이 이들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(안 제3조 제5항)
- 나. 시장이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, 책무 이행 정도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(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동주택관리법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다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,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”를 “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
2.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」의 준수 여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가. 시장이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(안 제3조 제5항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1조(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<u>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,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(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-----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</u> 2. <u>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「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」의 준수 여부</u>